

1. 개정이유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항목을 전산 코드화하여 통계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서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개선 (안 제19조제1항)

- 1) 현행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결과 작성 항목이 달라서 서식 개선이 필요함.
- 2) 이에 복잡한 점검결과 항목을 통일하여 간소화하고 점검항목을 코드화하여 통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체점검 제도개선에 활용하고자 함.

나. 종합정밀점검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 2년간 자체 보관(안 제1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7. 15.~8.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작동기능점검을”을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
점검을”로,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
시결과 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
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작동기능점검”을 “작동기능점
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
용하던 서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
용할 수 있다.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기를 합니다.

(앞쪽)

특정소방 대 상 물	명칭(상호)	대상물 구분(용도)			
	소재지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점검일수 : 일)				
점 검 자	[] 관계인 (성명: , 전화번호:)				
	[]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 전화번호:)				
	[] 소방시설관리업자 (업체명: , 전화번호:)				
점검인력	구분	성 명	자격구분	자격번호	점검참여일(기간)
	주인력				
	보조인력				
	보조인력				
	보조인력				
	보조인력				
	보조인력				

위와 같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계인 :

(서명 또는 인)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붙임서류	점검인력 배치확인서(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에 한한다) 1부
유의 사항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자체점검 보고서 내용 중 소방시설 등의 불량사항에 대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불량사항을 정비하도록 하는 조치명령을 발송합니다.	
2. 이러한 조치명령은 자체점검 결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기준에 미흡한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행정 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별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3. 사전통지가 없더라도 조치명령 전까지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구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정보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기를 합니다.

(뒤쪽)

1. 소방안전정보

대 표 자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 전화번호:
소방안전 관리등급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 관 리 자	[]소방기술자격,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업무대행감독, []겸직, []기타 성명: , 전화번호: , 최근 교육이수일: 년 월 일
소방계획서	[]작성 ([]보관 []미보관), []미작성
자체점검 (전년도)	종합정밀점검 ([]실시 []미실시), 작동기능점검 ([]실시 []미실시)
교육훈련	소방안전교육 ([]실시 []미실시), 소방훈련 ([]실시 []미실시)
화재보험	[]가입, []미가입 보험사: , 가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가입금액: 대인(천만원) 대물(천만원)
다중이용 업소현황	[]휴게음식점영업(개소) []제과점영업(개소) []일반음식점영업(개소) []단란주점영업(개소) []유흥주점영업(개소) []영화상영관(개소) []비디오물감상실업(개소) []비디오물소극장업(개소) []복합영상물제공업(개소) []학원(개소) []독서실(개소) []목욕장업(개소) []찜질방업(개소) []게임제공업(개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개소) []노래연습장업(개소) 제공업(개소) []산후조리업(개소) []고시원업(개소) []권총사격장(개소) []골프연습장업(개소) []안마시술소(개소) []전화방업(개소) []화상대화방업(개소) []수면방업(개소) []콜라텍업(개소) []해당없음

2. 건축물 정보

건축허가일	년 월 일	사용승인일	년 월 일
연 면 적	m ²	건축면적	m ²
층 수	지상 층 / 지하 층	높 이	m
건축물구조	[]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조적조, []목구조, []기타		
지붕구조	[]슬라브, []기와, []슬레이트, []기타	경사로	개소
계 단	[]일반(개소), []직통(개소), []피난(개소), []특별피난(개소)		
승 강 기	[]승용(대), []비상용(대), []피난용(대)		
주 차 장	[]옥내([]지하 []지상 []필로티 []기계식), []옥상, []옥외		

자체점검 결과

※ []에는 해당 시설에 √ 표를 하고, 점검결과란은 양호○, 불량×, 해당없는 항목은 /표시를 합니다. (앞쪽)

1.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구분	해 당 설 비	점검결과	구분	해 당 설 비	점검결과
소화 설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피난 구조 설비	[]피난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인명구조기구	
	[]스프링클러설비			[]유도등 및 유도표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비상조명등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휴대용비상조명등	
	[]물분무소화설비		소화 용수 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소화수조 및 저수조	
	[]포소화설비		소화 활동 설비	[]거실제연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부속실 등 제연설비	
	[]할론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연결살수설비	
	[]분말소화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경보 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기타	[]방화문	
	[]비상경보설비			[]방화셔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방 염	
	[]비상방송설비		비고		
	[]통합감시시설				
	[]자동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2. 안전시설등 점검결과 (다중이용업소)

구분	해 당 설 비	점검결과	구분	해 당 설 비	점검결과
소화 설비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비상구	[]방화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비상구(비상탈출구)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기타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가스누설경보기			[]영상음향차단장치	
피난 구조 설비	[]피난기구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			[]창 문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피난안내도	
	[]휴대용비상조명등		비고		

3. 세부 불량사항

설비명	점검번호	불량내용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기타		
안전시설등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u>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u>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u>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u>	① ----- ----- ----- ----- ----- ----- ---- <u>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u> ----- ----- <u>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u> ----- ----- ----- ----- ----- -----.
②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u>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u>	<u><삭 제></u>

이내에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② -----

----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
-----.